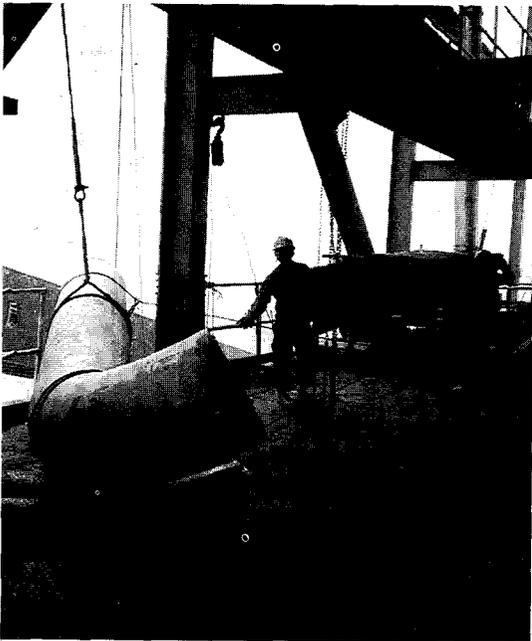


# 재무부 고시 및 회계 예규



## 신규제정

1) 부대입찰의 집행기준[재무부고시 93-19호, '93. 10. 20]

제 1조(목적) 이 기준은 예산회계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9조의2 제3항 및 계약 사무처리규칙 제2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의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공고)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8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부대입찰의 방법으로 발주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공고에 아래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부대입찰을 실시한다는 뜻
2.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제1차연도에 이행할 공사의 입찰금액에 한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하도급 사항을 기재하게 할 경우에는 그 뜻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는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적어도 10일전에 하

## 법령과 고시

여야 한다.

**제3조(현장설명)**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설명에 참가하는 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현장설명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1. 낙찰자는 하수급예정자와 하도급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부대입찰내용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
3. 기타 부대입찰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부대입찰)**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여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시 산출내역서의 별지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하 “하도급 사항”이라 한다)을 기재하고 하수급예정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하수급예정자의 상호, 대표자 성명 및 도급한도액, 면허·허가 등의 종류
2. 하도급할 공사의 종류와 물량
3. 하도급할 공사의 종류별 금액
4. 당해 하수급예정자의 선정방법

**제5조(부대입찰 내용의 심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부대입찰내용을 심사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낙찰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부대입찰에 참여한 하수급예정자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하도급공사 시공에 필요한 면허,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2. 당해 하수급예정자의 도급한도액을 초과한 부대입찰이 포함된 경우
3. 입찰금액에 대한 하도급금액의 비율이 건설법령상 의무하도급 금액비율에 미달될 때
4. 기타 입찰조건에 위배된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산출내역서 검토결과 회계예규 “총액단가입찰집행요령” 제4조의 무효입찰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당해 무효사유가 부대입찰의 하도급사항에 관한 것일 때에는 당해 입찰참가자에게 통지하고, 통지일로부터 5일 이내의 보완기간을 부여하여 이를 보완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하도급계약 체결)**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시 산출내역서에 기재한 하도급사항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하여야 한다.

1. 부대입찰에 참여한 하수급예정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하도급계약체결에 응하지 아니한 때
2. 부대입찰에 참여한 하수급예정자가 부도, 면허취소 발생 등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 때

**제7조(하도급사항의 변경)**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예정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하도급사항의 변경을 상호협의하여 요청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적정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 부 칙

이 고시는 1993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2)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산정기준[회계예규 2200. 04-148, '93. 10. 20]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산회계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를 산정하는 기준을 정함에 있다.

**제2조(실비산정기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실제 사용된 비용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계약사무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간접노무비 산출을 위하

여 계약대상자로 하여금 급여 연말정산서류,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간접노무비 지급 관련서류를 제출케 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경비의 산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경비지출 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① 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중 당해현장에서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제8조 제2항 및 제1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규칙 제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직종의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② 경비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 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며,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산재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한다.

**제4조(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의 산정)**

① 당초 계약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의 실비산정은 당초 계약단가에 실제단가증감액(품셈에 의하여 산정된 당초 단가와 변경된 단가와와의 차액)과 동증감액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초 계약내용의 전부가 변경된 경우의 실비산정은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기타 실비의 산정)** 제4조 및 제5조 규정이외의 경우에 실비의 산정은 변경된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와와의 차액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일반관리비 및 이윤)**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대하여 계약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여 계약사무처리규칙 제8조에서 정하는 율의 범위내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1993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개 정**

**1) 공사입찰유의서(회계법규 2200.04-102-13. '93. 10. 20)**

현행	개정
<p>제7조(입찰서의 제출등) ①~⑥(생략)</p> <p>⑦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 내역서 제출시 하도급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p>	<p>제7조(입찰서의 제출등) ①~⑥(현행과 같음)</p> <p>⑦시행령 제8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의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별지에 다음 각호의 해당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p>1. 하수급예정자의 상호, 대표자성명, 면허, 허가등의 종류</p> <p>2. 하도급할 공사의 종류와 물량</p>

법령과 고시

현행	개정
<p>제10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15.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제11조(낙찰자의 결정) ①유효한 입찰자중 정부에서 예정가격이하인 최저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예정가격이 20억원(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또는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 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미만인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예정가격의 100분의 85이상으로 입찰한 자로서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lt;후단 신설&gt;</p> <p>①~⑤(생략)</p>	<p>3. 하도급할 공사의 종류별 금액 4. 당해하수급 예정자의 선정방법</p> <p>제10조(입찰의 무효) ..... ..... 1~15. (현행과 같음) 16. 시행령 제8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입찰로서 산출내역서에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입찰</p> <p>제11조(낙찰자의 결정) ①..... ..... .....100억원 (.....) .....,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 또는 에너지 이용합리화에 의한 특정열사용 기자재 설치공사의 경우에는 10억원) ..... 하되, 이 경우 시행령 제9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⑤(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1. 이 회계예규는 1993년10월20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예규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02-12, “공사입찰유의서”를 회계 예규 2200.04-102-13, “공사입찰유의서”로 한다.</p>

2)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14, '93. 10. 20)

현행	개정
<p>제21조의2(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금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대해 미지급금액에 대</p>	<p>제21조의2(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는 경우에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회계년도 개시 후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당해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p>



현행	개정
<p>②~③(생략)</p> <p>제22조(하도급의 제한) ①~②(생략)</p> <p>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하거나 또는 통보받은 때에는 하도급 계약금액이 하도급하고자 하는 부분의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85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하도급 공사의 성질 및 이행의 난이도, 공사량의 다과, 하도급계약 체결방법 및 계약자와 하도급자의 의견등을 참작, 심사 하여 당해공사의 적정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자에게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제1항 단서인 경우는 통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④~⑦(생략)</p>	<p>한 때에는 당해 하도급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④(현행②~③과 같음)</p> <p>제22조(하도급의 제한) ①~③(현행과 같음)</p> <p>③..... .....때에는 계약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5미만인 경우(시행령 제8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사는 제외)로서..... .....때에는..... ..... ..... ..... ..... ..... ..... ..... ..... .....</p> <p>④~⑦(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1. 이 회계예규는 1993년10월20일부터 시행한다.</p> <p>2. 이 예규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04-13, "공사계약일반조건"을 회계예규 2200.04-104-14, "공사계약일반조건"으로 한다.</p>

3) 선금지급요령 (회계예규 2200.04-131-13, '93. 10. 20)

현행	개정
<p>제2조(적용범위) ①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선금지급 요청일까지의 발주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제조와 1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제조와 1천만원이상인 용역으로서 그 이행기간(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서상의 이행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60일이상인 계약(계약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p>	<p>제2조(적용범위) ①..... ..... ..... .....5백만원이상인 용역..... ..... ..... (경쟁계약</p>



5)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회계예규 2200.04-140-6, '93. 10. 20)

현행	개정
<p>제3조(계약보증금 및 차액보증금)</p> <p>①~②(생략)</p> <p>③예정가격의 100분의 85미만인 낙찰자는 예정가격과 낙찰금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과 함께 차액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차액보증금을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차액의 2배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④~⑥(생략)</p> <p>제13조의2(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p> <p>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미지급액에 대하여 은행의 일반자금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p> <p>2.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p> <p>②(생략)</p>	<p>제3조(계약보증금 및 차액보증금)</p> <p>①~②(현행과 같음)</p> <p>③..... 하</p> <p>되,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자의 경우 예정가격의 100분의 85에 상당하는 금액과 낙찰금액과의 차액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p> <p>④~⑥(현행과 같음)</p> <p>제13조의2(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p> <p>①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후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당해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단서삭제)</p> <p>1.~2. (삭제)</p> <p>②(현행과 같음)</p>
부 칙	
<p>1. 이 회계예규는 1993년10월20일부터 시행한다.</p> <p>2. 이 예규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41-5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을 회계예규 2200.04-141-6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으로 한다.</p>	



법령과 고시

현행	개정
<p>2. 특수기술을 요하는 공사 (1)~(25) (생략) <u>〈신설〉</u></p> <p>3. ~5. (생략)</p> <p><b>제3조(제한기준)</b>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9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 또는 각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u>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u></p> <p>예 : ① 20억원미만의 공사계약의 경우 : 공사현장 관할 시·도내에 그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로 제한하면서 특수한 기술보유상황 등으로 중복적 제한을 할 수 없음. ②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 : 기술보유상황, 공사실적을 동시에 요구하여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없음. ①~③(생략)</p>	<p>2. .... (1)~(25) (현행과 같음) (26) 산간벽지 등 특수지역에서 시공하여야 하는 <u>군사시설공사</u></p> <p>3. ~5. (현행과 같음)</p> <p><b>제3조(제한기준)</b> ① ..... ..... ..... ..... ..... <u>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실적 또는 기술보유상황으로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u> <u>〈예시 : 삭제〉</u></p> <p>②~③(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1. 이 회계예규는 1993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예규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43-4 “제한경쟁계약운용요령”을 회계예규 2200.04-143-5 “제한경쟁계약운용요령”으로 한다.</p>

**8) 공동도급계약 운용요령** (회계예규 2200.04-136-5, '93. 10. 20)

현행	개정
<p><b>제8조(입찰공고)</b>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도급계약이 가능하다는 뜻과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을 입찰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p> <p>1. 계약사무처리규칙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제한대상(금액)일 경우(다만, 공사에 있어 건설업법에 의한 일반공사와 특수공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p>	<p><b>제8조(입찰공고)</b> ..... ..... ..... <u>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목적·성질상 공동도급계약에 의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예 : 동일현장에 2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고 곤란한 경우,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를 제외하고는</u> ..... <u>〈삭제〉</u></p>



# 법령과 고시

현행	개정
와 같이 공사규모별로 체감 적용한다. 표:생략	표:현행과 같음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1. 이 회계예규는 1993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p> <p>2. 이 예규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05-7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을 회계예규 2200.04-105-8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으로 한다.</p>

## 10) 선금지급요령(회계예규 2200.04-131-12, '93. 8. 25)

현행	개정
<p>제2조(적용범위)</p> <p>① (본문생략)</p> <p>1. 공사</p> <p>가. 계약금액이 <u>5억원이상</u>인 경우 : 100분의 20</p> <p>나. 계약금액이 <u>3억원이상 5억원미만</u>인 경우 : 100분의 25</p> <p>다. 계약금액이 <u>3억원미만</u>인 경우 : 100분의 30</p> <p>물품의 제조</p> <p>가. 계약금액이 <u>3억원이상</u>인 경우 : 100분의 20</p> <p>나. 계약금액이 <u>1억원이상 3억원미만</u>인 경우 : 100분의 25</p> <p>다. 계약금액이 <u>1억원미만</u>인 경우 : 100분의 30</p> <p>②~⑦ (생략)</p>	<p>제2(적용범위)</p> <p>① (현행과 같음)</p> <p>1. 공사</p> <p>가. .... <u>100억원이상</u> .....</p> <p>나. .... <u>20억원이상 100억원미만</u> .....</p> <p>다. .... <u>20억원미만</u> .....</p> <p>2. 물품의 제조</p> <p>가. .... <u>10억원이상</u> .....</p> <p>나. .... <u>3억원이상 10억원미만</u> .....</p> <p>다. .... <u>30억원미만</u> .....</p> <p>②~⑦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1. 이 회계예규는 1993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p> <p>2. 이 예규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31-11 “선금지급요령”을 회계예규 2200.02-131-12 “선금지급요령”으로 한다.</p>

## 회계통칙

### 1. 선금 및 기성대가지급에 대한 회계통칙

[회제 45101-1116, '93. 10. 16]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예산회계법령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과 기준·절차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관서에서는 관계법령을 발주자측에 유리하게 임의해석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하는 등 예산회계법 제7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계약의 원칙에 배치되는 사례가 있는 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소속 계약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지시켜 공정한 회계업무가 수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아래사항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회계법 제64조, 동법 시행령 제56조 및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동요령 제2조 제5항의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는 다음 경우에만 적용하기 바람.

- 자금배정이 지연된 경우(자금배정이 있을 경우 즉시 선금지급을 하여야 함)

- 계약체결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동사유 해제시 즉시 선금지급을 하여야 함)

- 계약자로부터 선금지급요청이 없거나 유예신청이 있는 경우

2.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7조 제3항의 “기성 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는 계약의 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적어도 90 일마다 지급”하여야 하는바, 기성 또는 기납부분이 발생하고 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개월마다 기성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를 지급하기 바람.

##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적용대상에 대한 회계통첩 [회제 45101-1117, '93. 10. 16]

정부공사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건설업체의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93. 7. 1 일부터 100억원이상 공사중 지하철·댐공사 등 14종의 공사를 대상으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PQ)를 시행하고 있는 바, 동 제도의 적용대상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시달하니 귀 부(원·처·청) 및 산하기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주지시켜 계약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계약사무처리규칙 제31조 제3항 제1호 “길이 100m이상의 교량공사”는 다음 공사를 말함.

- 단위교량 100미터이상으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경우

- 교량과 교량 이외의 공사(예: 도로)가 복합된 경우에는 교량이 100미터이상이고, 교량부

분 예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

- 100미터이상인 교량을 개축·보수하는 경우로서 개축·보수공사부분의 예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

2. 계약사무처리규칙 제31조 제7호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는 다음 공사를 말함.

- 터널공사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

- 터널공사의 터널 이외의 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 터널공사부분의 예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

- 터널을 개축·보수하는 경우로서 개축·보수공사부분의 예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

## 3. 물가변동적용 등의 적정집행을 위한 회계통첩 [회제 45101-888, '93. 8. 20]

최근 일부관사에서 예산회계법령에 의한 계약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달리 집행하거나 관련규정의 미숙지로 인하여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례가 있어 각종 민원발생의 소지가 되고 마는 바,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귀 부처 및 소속기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철저히 주지시켜 적절한 회계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조정금액 산정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1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3조의 규정대로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에 대하여 산출하여야 하며, 특히 일부 품목 또는 비목(예: 노임)만 한정하여 산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2. 경쟁입찰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1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방법에 대하여 공고의 목적인 경쟁성·공정성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입찰공고방법에 관한 회계통첩”(회제 2210-1459, 1988. 7. 1)을 기 시달한 바 있으나, 관련법정단체에의 통보가 잘 이행되지 않은 사례가 있는 바, 동 회계통첩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할 것.